

김제시의회훈령 제7호

김제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3.21.)에서 의결된 김제시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 

2023년 3월 21일

김제시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김제시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안전심사와 관련하여 심사보조자로 활용할 전문가의” 를 제3조 및 제7조,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전문가 활용과 전문가 수당지급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안전심사와 관련하여 심사보조자로 활용할 <u>전문가의</u> 수당지급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제3조 및 제7조,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u>전문가 활용과 전문가의 수당지급액</u> -----.</p>